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00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강선영 · 최수진 · 김 건
강대식 · 김용태 · 이달희
임종득 · 구자근 · 유용원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

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를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두 차례”를 “세 차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 직시킬 수 있다.</p> <p>1. <u>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u></p> <p>2. <u>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u></p> <p>3.·4. (생략)</p> <p>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 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u>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 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6. 전직시험에서 <u>두 차례</u>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 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p> <p>② (생략)</p>	<p>제28조(직권 면직) ① ----- ----- ----- -----.</p> <p><u><삭 제></u></p> <p><u><삭 제></u></p> <p>3.·4. (현행과 같음)</p> <p>5. ----- ----- <u>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u>----- -----</p> <p>6. -----<u>세 차례</u>----- ----- ----- -----</p> <p>② (현행과 같음)</p>